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09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윤건영 · 조정식 · 차지호
정준호 · 권칠승 · 송기현
민병덕 · 김성희 · 진선미
김한규 · 진성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의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추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이른바 ‘공천헌금’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특히,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구국회의원이나 정당 유력인사에게 제공하는 정치후원금이 사실상 공천헌금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당선인의 과거 후원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이를 감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의 정당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의 경우 위반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단기 공소시효 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선거 당선인의 경우 최근 5년간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연간 100만원 이하 제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당선인의 임기 동안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정당공천을 매개로 하는 불법적인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4조의2, 제261조제3항제6호 및 제268조제4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장에 제1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4조의2(당선인의 후원금 기부내역 공개) ① 제187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0조의2 및 제191조에 따라 당선증을 교부받은 당선인은 최근 5년간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한 내역(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100만원 이하를 기부한 내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 기부내역(이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이라 한다)을 해당 당선인의 임기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61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9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6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써 완성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94조의2(당선인의 후원금 기부내역 공개) ① 제187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0조의2 및 제191조에 따라 당선증을 교부받은 당선인은 최근 5년간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한 내역(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100만원 이하를 기부한 내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 기부내역(이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이라 한다)을 해당 당선인의 임기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u>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④ ~ ⑫ (생략) 第268條(公訴時效) ① ~ ③ (생략) <u><신설></u>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9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하지 아니한 자 ④ ~ ⑫ (현행과 같음) 第268條(公訴時效)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 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 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	---